

[별표 1]

**채용전형 가산점
(제12조 관련)**

가점대상	가산비율	비 고 (증빙)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비율 (5% 또는 10%)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5. 기타 법령에서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6.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 따른 장애인	10%	장애인 증명서
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취업보호 대상자	3%	취업보호 기관의 확인서

※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비율에 따른 가점을 부여